

2021년도 제1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2021. 7. 14.(수요일), 10:30
- 장 소: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석자: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3분과위원회 위원 5명 참석
 - 심의위원: 최승수(분과위원장), 강태욱, 김경숙, 노정동, 박성호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차(제2021-172회, 173회) 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강나래 전문위원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1,611건(안건번호 제2021-80566호~81629호)
 - 회의결과: 안건번호 제2021-80566호(순번 1번)는 블로그 이용자가 미국 애니메이션을 제공한 사안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다고 판단되어 가결함.
안건번호 제2021-80567호~80568호(순번 2번~3번)는 웹하드 사이트에서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불법복제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 중인 점, 합법 시장에 미칠 영향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가결함.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는 심의안건 게시물 1,606건은 삭제 또는 전송 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1년 제1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21-172회, 173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강나래 전문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5쪽의 OSP명, 8쪽의 게시판명, 저작물명 등과, 제2호 안건 회의록과 관련하여 7쪽의 OSP명, 저작물명, 저작물의 회차, 8쪽의 저작물명, 10쪽의 OSP명, 게시판명, 지역명 등이 노출된 부분의 공개 여부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 위원님들의 편의를 위해 비식별 처리 대상으로 보이는 부분은 취소선으로 표시해 두었음.
- E 위원: 제1호 안건 회의록 2쪽 회의결과 부분에 누락된 문구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바, 해당 부분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그 이외의 제1호, 제2호 안건의 해당 부분은 민원인 신고 건으로 비식별 처리함이 타당함. 나머지 부분은 전부 공개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 됨.
- D, B, A, C 위원: 위원님 의견에 동의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제1호 안전 회의록 회의결과 부분 문구를 수정하고, 나머지 시정권고 심의 회의 부분에서 민원 관련 OSP명, 게시판명, 저작물명, 저작물의 회차, 지역명 등은 비식별 처리하여 공개하기로 함.

3. 안전상정

o 제1호: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

- 강나래 전문위원: 심의위원님들께서는 PC에 접속하여 금일 심의안건의 저작물명, 저작권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 등 목록을 직접 확인해 주시고, 저작권법 시행령 제67조의4 및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규정 제11조에 따른 제척 사유 해당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해당 없음.
- 최승수 분과위원장: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강나래 전문위원: 금일 심의안건은 52개 온라인서비스 이용자들이 게시한 1,611건의 복제물에 대한 시정권고 심의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번은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블로그에서 미국 애니메이션 ‘※※※ ※※※※’ ※※ ※ ※※를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한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1건임.

(순번 1번 심의대상 게시물에 직접 접속하여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21분을 스트리밍 형식으로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A 위원: 해당 저작물의 다른 회차도 블로그에 게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게시판의 전체 목록을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의 다른 회차가 게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이 중 일부 게시물은 “이 게시물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요청으로 비공개 조치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고 있으며, 이는 심의위원회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로 보임.

- A 위원: 화면 우측에 ‘※※※※※ ※※※ ※※※※※’에 접속하여 주시기 바람.

- 강나래 전문위원: (‘※※※※※ ※※※ ※※※※※’에 접속하여 보여주면서)미국 애니메이션 ‘※※※※※’ ※※※ ※※※※※의 전체 분량을 우리말 자막과 함께 스트리밍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음.

- A 위원: 2018년부터 다량의 불법복제물을 지속적으로 게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B 위원: 해당 블로그에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지?
- 강나래 전문위원: 광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됨. 블로그 우측 하단의 'TOTAL'은 블로그 이용자들의 누적 접속 횟수를 의미하는데, 해당 블로그의 경우 심의일 기준 약 36만 회 접속이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됨. 해당 블로그를 통하여 불법복제물 이용이 이루어진 횟수로도 추정할 수 있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시정권고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1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2번~3번은 1명의 실명의 민원인과 1명의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웹하드 사이트에서 방송 '※※ ※※ ※', 만화 '※※ ※※※※ ※※ ※※※ ※※※'를 각 유료로 판매 중인 사안임. 총 게시물 수는 4건임.
(순번 2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79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2,200원에 대여 가능함.
(순번 3번 채증 자료를 보여주면서)해당 저작물을 30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으며, 네이버 시리즈 on에서 200원에 대여, 500원에 구매 가

능함.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여 가결 의견으로 검토하였음.

(해당 안전표를 제시하면서)불법복제물명, OSP명 등은 해당 안전표에 정리해 두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람.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영리를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전송하고 있으므로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가결 의견임.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2번~3번은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을 가결함.
- 강나래 전문위원: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순번 4번~1001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건임. 총 게시물 수는 1,538개임. 심의대상 게시물 모두 불법 복제한 영화, 방송, 음악, 만화, 게임, 출판 등을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임.
(심의안전 목록을 제시하면서)일부 안전을 별도로 설명하겠음. 나머지 안전들은 위원님들께서 각자 PC로 접속하여 확인해 주시기 바람.
(음악 '하루만 더'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61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음악 '하루만 더'를 175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21년 06월 24일 신곡'이라는 이름의 zip 파일로 총 146곡을 전송

중에 있음. 특정된 음악저작물은 2021. 6. 24.에 발매한 국내 발라드 음악이며, 멜론, 네이버 바이브(VIBE) 등 음원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멤버십 유료 가입 후 무제한으로 듣기 가능함.

(게임 '문명 Civilization 6'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77번은 웹하드 사이트에서 게임 '문명 Civilization 6'를 630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2016. 10. 21. 출시한 PC 게임이며, STEAM 사이트에서 65,000원에 구매 가능함.

(영화 '미드나이트' 관련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895번은 모바일 웹하드에서 영화 '미드나이트'를 163 포인트에 판매 중인 사안임. 영화 전체 분량인 약 102분을 스트리밍 및 mp4 파일 다운로드 형식으로 제공함. 2021. 6. 3.에 개봉한 국내 스릴러 영화이며, 현재 극장 상영 중임.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순번 1002번~1064번은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긴급대응저작물에 대한 신속심의를 요청한 사안임. 2021. 7. 7. 극장 개봉한 영화 '※※ ※※※'에 대한 불법복제물의 전송이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보호원은 해당 저작물의 불법 유통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하여 긴급심의를 요청함. 심의일 기준 오전 9시까지 심의 요청된 총 68개 게시물을 추가하여 보고 드리겠음.

(순번 1002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웹하드 사이트에서 해당 저작물을 187 포인트에 판매하고 있음.

(순번 1064번 채증 자료를 제시하면서)네이버 밴드에서 해당 저작물의 전체 분량인 약 98분을 mp4 파일로 제공하고 있음.

위원님들께서는 각자 PC로 접속하여 심의시스템에 등록된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참석 위원 전원: (모니터링 자료와 심의대상 게시물을 확인함)순번 4번~1064번은 모두 웹하드 등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으로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최승수 분과위원장: 만장일치로 순번 4번~1064번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고, 나머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 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제2021-80566호~81629호(순번 1번~1064번)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 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가결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가결함.

4. 폐회 선언

- 최승수 분과위원장이 제1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21년 제181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21. 7. 21.

분과위원장 최승수

위원 강태욱

위원 김경숙

위원 노정동

위원 박성호